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3월 22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3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 3.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가. 제안이유

동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 8명 중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토지평가에
다른 보상업무 소관과장인 건설과장으로 구성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별첨자료 참조

-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위원 중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소관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업무성질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되므로 조례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
-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는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위원구성을 공무원 8명,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치 않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 신준식위원(질의)

위촉위원을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 지가조사계장(답변)

지역사정에 정통한 전문성이 필요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공무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구본춘위원(질의)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부산시 공릉조례 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구의 자체 개정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구 자체 개정사항이면 당연히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위촉위원 5명을 당초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지역사회에 밝은 사람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 지가조사계장(답변)

건설과장이 업무소관을 보아 심의 과정상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다른 구와 관계없이 우리구에서 능동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5명의 위촉위원은 전문성과 직책경험상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라고 판단되어 구성하였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검토하여 조례 개정시 보완토록 하겠습.

○ 김신우위원(질의)

당연직 8명과 위촉위원 5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지역사회에 밝은 위촉위원을 확대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 지가조사계장(답변)

금회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만 검토하였으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구성비율은 향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

5. 토론요지 : 없 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찬성 7명, 반대 2명)